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 발 의 자 : 조경구, 김원규, 박종필, 윤영애, 이성오, 이재화,

정일균, 하병문, 허시영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 2. 제안이유

□ 지역 농업작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안 제4조)
  - 주소지 제한 없이 대구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 종사자를 지원
- □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담부서의 지정·설치, 담당 업무 등 규정
- □ 농업작업안전재해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시계획의 매년 수립, 실시계획 포함 내용 규정

-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연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
-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농업기계·장비 안전 교육 등 교육사업 추진 근거 마련
- □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4. 검토의견

#### □ 제안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1.5배 이상 높은 재해 발생율²)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이나 체계는 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농업작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년도	전체 산업			농업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2011	14,362,372	93,292	0.65	40,017	575	1.44	
2012	15,548,423	92,256	0.59	46,489	603	1.3	
2013	15,449,228	91,824	0.59	50,634	638	1.26	
2014	17,062,308	90,909	0.53	61,681	621	1.01	
2015	17,968,931	90,129	0.5	68,697	647	0.94	
2016	18,431,716	90,656	0.49	80,990	729	0.9	
2017	18,560,142	89,848	0.48	76,033	555	0.73	
2018	19,073,438	102,305	0.54	83,540	648	0.78	
2019	18,725,160	109,242	0.58	79,482	642	0.81	
2020	18,974,513	108,379	0.57	78,940	639	0.81	

#### □ 주요 검토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이 대구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작업", "농업인", "농업근로자", "농업작업안전재해" 등 용어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등의관계 법령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의 정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음.

## ○ 조례의 지원대상 규정(제4조)

- 안 제4조(지원대상)는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대구시 안에서 농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규정하였음.
  - \* 농업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농업근로자: 농업작업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지원대상에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먼저 조례를 제정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폭넓게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대구시 내의 농업작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많은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E	사시도	조례	지원대상	비교
-----	-----	----	------	----

구분	대구(안)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기족종사자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근로자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	농어업인 (명시규정 없음)
지원대상 주소지 제한	제한 없음	시내 제한	도내 제한	명시규정 없음	도내 제한	명시규정 없음

### O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

- 안 제5조(전담부서 설치)는 시장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부서는 예방실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음.
- 전담부서의 설치·지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 사업발굴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르는 대구시의 인력과 조직 보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O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실시계획 수립)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 법 제16조에서는 농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음.

조례안에서는 법에서 규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는 바,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 타시도 조례 예방계획 수립 사항 비교

구분	대구(안)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예방계획	매년	5년	주기없음	매년	주기없음	5년
수립 주기	(임의)	(강행)	(강행)	(임의)	(강행)	(강행)

###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교육사업 근거 마련(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지원사업 실시)는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연구·기술 개발,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안전재해 예방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 안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는 농업기계·장비 안전 교육,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등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 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더하여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원·교육사업의 근거를 폭넓게 마련한 것임.

## O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안 제9조)

- 안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는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과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의 전담부서 설치와 연계하여 전문직위(전문관) 제도를 활용한 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전문교육과 인증을 통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임.

### O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11조)

- 안 제11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는 시장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는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는관계 법령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담부서의 설치,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의 내용,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지원사업 중 하나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 효과적인 안전재해 예방 사업 발굴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대구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대구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의 취지가 현 시점에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여 관련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르는 예산, 인력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O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